

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2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개정된 「국민제안규정」
및 「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」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.
- 나. 제안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구미시 시민을 포함하여 시정에
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 제안 건의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
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안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의 대상을 확대함. (안 제1조)
- 나.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 관련 제안 발굴 근거
마련(안 제3조, 안 제7조의2)
- 다.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(안 제4조)
- 라. 제안 제출 및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4조)
- 마. 공모제안 처리기간을 명시(안 제13조)
- 바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통일(안 제16조, 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- 2) 국민제안규정 및 시행규칙
- 3) 공무원제안규정 및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기 타 : 조례안 붙임

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민(이하“시민”이라 한다)과”를 “시민을 포함하여 시정에 관심있는 자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있는”을 “있거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공모제안인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생활공감정책”이란 우리 시정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,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(이하 “온라인 국민참여포털”이라 한다)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5조 중 “관한사항”을 “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발굴 등) ①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

대한 시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제9조제2항 중 “사항은 「구미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”를 “사항은 「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범위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를 “범위에서 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노력의 정도

제13조제1항 중 “접수한 날”을 “접수한 날(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종료일을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.

제1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16조제1항 본문 중 “금상·은상·동상”을 “금상·은상·동상·장려상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”를 “5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동 상 : 100만원

4. 장려상 : 50만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<u>시민</u> 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·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,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시민을 포함하여 시정에 관심있는 자</u> 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 <u>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적용범위)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<u>있</u> <u>거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공모제안인</u> ----- -----.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“생활공감정책”이란 우리</u> <u>시정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</u> <u>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</u>

제4조(제안의 제출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제5조(제안의 공동제출)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.

제4조(제안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,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(이하 “온라인 국민참여포털”이라 한다)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5조(제안의 공동제출) -----

---- 관한 사항-----
----.

제7조의2(생활공감정책에 관한

	<u>시민제안의 발굴 등) ①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시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.</u> <u>②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
제9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(생략)	제9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구미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,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「구미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를 준용한다.	②----- ----- ----- 사항은 「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」-----.
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③----- 각 호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수당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<u>범위안</u>	제11조(수당) ----- ----- 범위

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
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
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
다.

제12조(심사기준 등) ①시장은 제
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
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
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노력도

②·③ (생략)

제13조(채택여부의 결정) ①시장
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
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·결정
하고,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
지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
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

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
변상조례」-----

-.

제12조(심사기준 등) ①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노력의 정도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채택여부의 결정) ①-----

----- 접수한 날(공모제안
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종료일을
말한다)-----

--.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
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
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
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
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
수 있다.

②-----

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③ (생략)

제16조(제안의 등급)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·은상·동상으로 구분한다. 다만,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8조(부상금의 지급)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·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.

1. 금 상 :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

----- . 이 경우
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제안의 등급) ①-----
----- 금상·은상·동상·장려상----- . ---

----- 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부상금의 지급) ①-----

각 호-----
----- . -----

----- .

1. ----- 500만원

2. 은 상 : 100만원 이상 200만
원 미만

3. 동 상 : 50만원 이상 100만
원 미만

<신 설>

② (생 략)

2. ----- 300만원

3. 동 상 : 100만원

4. 장려상 : 50만원

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0.1.25>

1 ~ 15 생략

16.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·운영

17 ~ 21 생략

□ 「국민제안규정」

제4조(국민제안의 제출) ①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,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(이하 "온라인 국민참여포털"이라 한다)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

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⑤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,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(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(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(副賞)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채택제안의 결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(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)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시 가능성

2. 창의성

3. 효율성 및 효과성

4. 적용 범위

5. 계속성

6.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(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)

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·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, 행정기관의 장은 의뢰한 실험·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택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.

⑦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12조(중앙우수제안의 등급)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·은상·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.

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「상훈법」과 「정부표창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부상의 지급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.

1. 금상 :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

2. 은상 :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

3. 동상 :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

4. 장려상 :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

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,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.

□ 「공무원제안규정」

제4조(제안의 제출) ①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공모제안은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(이하 "온라인 국민참여포털"이라 한다)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부상의 지급)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(副賞)은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며,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. 다만,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.

1. 금상: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
2. 은상: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
3. 동상: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
4. 장려상: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

②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제안 심사 후 시상시 창안등급을 금상, 은상 및 동상에서 금상, 은상, 동상 및 장려상으로 확대 조정함으로 인해 장려상 부분의 시상금이 신설되었음.
-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을 포상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.
(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)

3. 미첨부 사유

- 제안의 창안등급을 4단계로 확대 조정함으로 인해 장려상 부분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. (그러나 창안등급심사 시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)
-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 1000천원 미만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.

4. 작성자

지방행정서기 손수연